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4

발의연월일: 2020. 6. 12.

발 의 자:이 영·김 웅·金炳旭

송언석 • 이 용 • 홍문표

김도읍 • 박덕흠 • 김정재

김경만 · 윤창현 · 한무경

양금희 · 송석준 · 유의동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출자(엔젤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 및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제도를 운영 중임.

그런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고, 벤처기업의 성장 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3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u>2020년 12월 31일</u> 까	<u>2023년 12월 31일</u>
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	
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	
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	
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	
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	
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	
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	
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 ④ (생 략)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 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 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 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 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 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 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

		_
		_
		_
		_
		_
		_
		_
		_
		_
		_
	.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1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성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세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 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 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u>3천만원</u> 이내의 금액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아니한다.

② (생략)